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6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문정복·김준혁·이성운
강경숙·모경중·민형배
박은정·박성준·강준현
이재관·김주영·박홍배
김문수·김태선·박 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① 학교의 장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 강사(이하 이 조에서 “강사”라 한다)를 두어 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사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

③ 학교의 장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강사가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 조회.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조회 절차를 준용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강사의 성범죄 경력의 확인

④ 학교의 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강사를 즉시 방과후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강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강사가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강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① 학교의 장은 방과후과정을 운</u>

영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 강사(이하 이 조에서 “강사”라 한다)를 두어 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사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

③ 학교의 장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강사가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 조회.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조회 절차를 준용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강사의 성범죄 경력의 확인

④ 학교의 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강사를 즉시 방과후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강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강사가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

	<u>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⑤ 그 밖에 강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